



# LEGAL UPDATE

소송·중재

Mar. 2024

## 여유자금 투자 방법을 정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않고 체결된 계약이 사법상 무효임을 확인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대법원2023다259262)

법무법인(유한) 화우(이하 '화우')의 기업송무그룹은 펀드의 대표운용역이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계획을 위반하여 우선수익권 원리금 수취권 양도·양수계약과 대여계약의 체결을 운용지시함으로써 유동화전문회사에게 합계 약 90억 원의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유동화전문회사를 대리하여 위 운용역 등에게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이 사건 각 계약 상대방에게는 부당이득반환을 각 청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0가합114857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2043079 판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59262 판결). 이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제22조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무효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대법원의 최초 판결이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1. 사안

A 유동화전문회사는 B펀드가 C은행이 보유한 합계 86개의 부실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이고, A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계획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과정에서 자금의 여유가 있을 경우 향후 유동화계획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이하 '이 사건 자산유동화계획').

한편,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의 투자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2조에 의한 업무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2호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 펀드의 대표운용역 甲은 ① A 유동화전문회사가 D주식회사의 우선수익권 원리금 수취권을 6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② A유동화전문회사가 E주식회사에 30억 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도록 지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계약'), 이에 따라 우선수익권 원리금 수취권 양도·양수계약과 대여계약이 각 체결되었으나, 결국 A 유동화전문회사는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D, E주식회사에 지급한 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 유동화전문회사는 ① 대표운용역 甲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② D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③ E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대여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각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법원의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① 자산유동화법 제22조는 입법 목적 및 제반규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② 이 사건 자산유동화계획상 '안전한 방법'이란 자산유동화법의 입법 목적,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자산유동화 실무안내서 등에 비추어 '국채 또는 정기예금 등과 같은 원금의 손실가능성이 거의 없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③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은 자산유동화계획상 '안전한 방법에 의한 여유자금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강행규정인 자산유동화법 제22조에 반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와 같은 제1심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3. 판결의 의의

이 사건 판결은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가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이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상 무효'임을 선언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분쟁사례(유동화전문회사에서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투자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례)에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 판결은 자산유동화법은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자산유동화법의 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입법목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판결인바,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우의 기업송무그룹은 기업을 둘러싼 각종 소송에 대하여, 소송진행방향, 입증활동 등 소송·중재 전반에 대하여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쟁해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안사건 뿐만 아니라 종국적인 권리실현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유형의 보전처분(각종 가압류 및 가처분 등)으로부터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ntacts

**이진석**

T. (+82) 2 6182 8387

파트너변호사

E. [jinsl@yoonyang.com](mailto:jinsl@yoonyang.com)

**이보현**

T. (+82) 2 6003 7069

파트너변호사

E. [bhlee@hwawoo.com](mailto:bhlee@hwawoo.com)

**조재륜**

T. (+82) 2 6003 7795

파트너변호사

E. [jrcho@hwawoo.com](mailto:jrcho@hwawoo.com)